

1. 제재 결의일: 2015. 3. 19.

2.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

- 종전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회사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규정은 제21조에 따라 모집주선의 경우에 준용됨에도,
 - 유안타증권(주)(舊동양증권)은 (주)동양 및 동양시멘트(주)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모집주선함으로써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

3. 제재 종류

- 유안타증권(주)에 대하여 경고

<관련 규정>

종전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2항, 제21조